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21
----------	------

제출연월일 : 2020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관계 법령의 준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보상금 및 포상금의 산정기준과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보완하며,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에 있어서 예산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공익제보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11조제4항)
- 나. 구조금 지급에 있어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3조제3항)
- 다. 보상금 지급사유에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과 “징계부가금 부과” 를 추가하여 신설(안 제14조제1항 제3호, 제4호)
- 라. 보상금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별표 1” 로 보완(안 제14조제2항)
- 마. 포상금 산정기준을 “별표 2” 로 수정(안 제15조제2항)
- 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에 있어서 예산 집행의 근거 신설(안 제1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7]

-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제77조(보상금의 결정), 별표 2 보상금의 지급기준(제77조제1항 관련)
-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구조금)
-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7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 5)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23조(서면의결)
- 6)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2조(서면의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2) 입법예고(2020. 4. 23. ~ 5. 12.) 결과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3]
- 3) 교육규제심사 : 심사대상 교육규제 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별첨 4]
- 5)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별첨 5]
- 6) 학생인권영향평가 : [별첨 6]
- 7) 관계법규 : [별첨 7]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익제보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신속한 구조금,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결정이 요구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으며, 이후 공익제보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절성을 심의·의결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의 별표 2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를”을 “별표 1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을”로 한다.

라. 징계부가금 부과

3.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제15조제2항 중 “별표” 를 “별표 2” 로, “심의를” 을 “심의·의결을” 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회의나 협의, 자문 등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참석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공익제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 1]

보상금 산정기준(제14조 관련)

1.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 30%
2. 보상대상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3. 보상대상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4. 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5. 보상대상가액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이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1조(공익제보위원회의 회의) ① ~ ③ (생략) <u><신 설></u></p>	<p>제11조(공익제보위원회의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공익제보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u> 1. <u>신속한 구조금,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결정이 요구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u> 2. <u>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u> 3. <u>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u></p>
<p>제13조(구조금 등 지원) ①·② (생략) <u><신 설></u> ③ ~ ⑥ (생략)</p>	<p>제13조(구조금 등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교육감은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으며, 이후 공익제보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절성을 심의·의결한다.</u>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p>
<p>제14조(보상금) ① 공익제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p>	<p>제14조(보상금) ① ----- -----</p>

현행	개정안
<p>로 교육기관의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교육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신 설></p> <p>3.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 다. (생략)</p> <p><신 설></p> <p>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의 별표 2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 ⑧ (생략)</p>	<p>-----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u></p> <p>4. ----- 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u>징계부가금 부과</u></p> <p>② ----- ----- <u>별표 1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을</u> ----- -----.</p> <p>③ ~ ⑧ (현행과 같음)</p>
<p>제15조(포상금)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u>별표</u>의 포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공익제보위원회의 <u>심의를</u>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p>	<p>제15조(포상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별표 2</u>----- ----- <u>심의·의결을</u> ----- -----.</p>
<p>제19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생략)</p> <p><신 설></p>	<p>제19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p> <p>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회의나 협의, 자문 등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참석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공익제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p>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에 있어서 공익제보위원회 회의, 구조금 및 보·포상금의 집행 등에 따른 운영 및 시행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추계 해당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교사 안종훈 (02-399-9277)

【별첨 3】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4조 별지 제5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제14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의견 없음	○ 없음

【별첨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평가담당	감사관	행정6급	이지은
입안주관부서	감사관	통보일	2020.5.6.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규칙안은 상위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서면회의 및 구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타당함 - 그러나 보상금과 관련하여 공익제보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재정증대 및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지급할 수 있는바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과 관련하여 학교의 경우 그 수입이 학교회계로 귀속되고 사학 교육기관의 경우 법인회계 등으로 귀속되는 등 직접적인 교육청 재정증대 및 비용절감을 가져오지 않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 또한 ‘징계부가금’ 도 법령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징계부가금의 부과 근거가 존재하고, 특히 국가공무원의 징계부가금은 세무서를 통해 징수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및 변상 책임의 이행과 환수금·가산징수금의 납부 등으로 인해 징계부가금이 조절되는 등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보상금 신청 당사자가 ‘교육기관의 재정증대나 수입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지급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보상금 지급 사유 보완과 관련하여 해당 근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절차를 하위 “규칙” 및 “지침” 등을 통해 자세히 규정·안내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에 공무원이 아닌 참석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기준” 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설명 및 세부기준이 필요함 		<p style="text-align: center;"><u>“참고의견”</u></p>

【별첨 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0A서울교육011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감사관		
	담당자명	안종훈	전화번호	02-399-9277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정책안전기획관		
	담당자명	신지은	전화번호	02-399-3910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0년 04월 29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0년 04월 29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2020년 04월 29일</p>				

【별첨 6】

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명 (정책/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	감사관	담당자	성 명 : 안종훈 직 급 : 파견교사 연락처 : 02-3999-277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기획홍보소위원회	위원장 정병수	
해당조항	검토결과		검토결과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p>-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우리 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 운영, 공익제보 보상금 산정,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 협의회 구성·운영의 예산집행 근거 신설 등을 위한 개정으로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됨.</p>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 <input type="checkbox"/> 중단권고
해당조항	참고의견		

※ 본 검토의견서를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

【별첨 7】

관계법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27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9. 4. 16.>

② ~ ③ (생략)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4. 16.>

⑤ ~ ⑥ (생략) [제목개정 2019. 4. 16.]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0. 17.] [대통령령 제30129호, 2019. 10. 15., 일부개정]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0. 15.>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6.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 ② (생략)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10. 15.>

② ~ ③ (생략)

[별표 2] 보상금의 지급기준(제77조제1항 관련)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비고 : “보상대상가액“이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27조(구조금)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0. 31.>

③ ~ ⑤ (생략)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제27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8. 4. 30.>

② ~ ③ (생략)

■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시행 2019. 10. 24.]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88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23조(서면의결) 보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1. 신속한 구조금 지급결정이 요구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안전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시행 2019. 10. 24.]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86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32조(서면의결) 보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1. 신속한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결정이 요구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안전이 경미한 경우